

최병두(전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¹⁾)

1차 구술

1. 구술자: 최병두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2년 2월 13일
5. 구술장소: 부산 연제구 변호사김훈태법률사무소
6. 구술분량: 08분 08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부림사건 이후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 이야기

구술자 : 제가 일(1)년 남짓 지나고 나니까, 입사한지. 위에 고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노 변호사가 (고참들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겠다 하니까, 나가신다 하니까 그냥 안 말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제가 제일 고참이 되었습니다. 근데 변호사 사무실이 외부에서 보기에 법률허문가들의 집단입니다. 근데 경력 일(1)년 반 남짓. 거기다가 같이 호흡 맞추는 직원들이 저보다 더 경륜이 짧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거 변호사로서는 좀 불안하죠. 불안했다기보다는 뭔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한 육칠(6~7)개월 정도를, 육칠(6~7)개월 정도를 아침에 우리가 출근시간이 아홉시까지인데 한 시간 땡겨서 여덟시까지 출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제 민사소송법을, 형사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은 일단은 절차를 갖다가 알아야 될 거니까. 해서 절차를 갖다가 민사소송법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가르친 거죠.

그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일 중에 일부니까 굉장히 그 주입력이 좋죠. 이해는 뭐 다음 문제고 일단 딱 들으면 그게 딱딱 머리에 박히죠. 그 다음에 인제 원래 강연을 다니시거나 이러면은 말씀 재밌게 하시거든요. 그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소위 뭐 설명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쉽게 알아지고 머리에 와서 박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실무적으로 쫓아다니고 하니까 그게 바로 현장에서 부닥치고 이러니까.

면담자 : 변호사로서의 업무의 고충이나, 변호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토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1) 1982년~1989년 재직

구술자 : 개업 초기가, 개업이 칠십팔(78)년도에 하셨는데 그때부터 팔십이(82)년까지는 제가 없었으니까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안다 하더라도 전해들은 얘기들이고. 근데 제가 팔십이(82)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로써는 그때 그게 의아해서 도대체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사건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형사사건도 합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소 때 잘 화를 안내셨는데 그때는 정색을 하고 사무장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표현 그대로 하면 ‘임마, 이기 들어온 지 며칠 되도 안한 놈이 형사사건 하자는데 설명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사무장이 저보다 서너 살 많으신 분이었는데. 다들 젊었죠. 노 대통령이 형사사건을 안 할라는 이유는 변호사가 해주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서 돈은 많이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형사사건을 계속할라 그러면은 그때 법조계에 만연해 있던 그 일종의 부조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기 싫으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안하는 거니까 따지 걸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관공서 주변에 법조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주선해주는 사건은 맡기 싫다. 민사사건은 거의 없고 주로 형사사건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풀어주겠다 하는 식의 청탁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건 못 하시겠다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형사사건을 변호사가 조력을 해주는 것이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같아요. 변호사의 힘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질 않는다. 예컨대 철학적인 문제, 인생관을 다루는 문제 이런 거 같으면은 그 인생관에, 인생관을 같이 한다면은 진력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실정법상 범죄 저지른 건 틀림없고 다만 범죄를 저질렀는데 소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정상참작을 좀 과도하게 해달라’ 이런 건 취향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때 형사사건을 하신 거는 시국사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그 와서 돈 안, 거의 돈 안 받고 해주는 사건들. 그리고 그것도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형사사건.

면담자 : 그 이외에 기억나는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구술자 : 제일 곤란한 것은 사무원들은 속성상 법원이나 검찰, 이런 데 가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직접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하고 사무원들하고의 시각차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지는 엘리트의식, 그 다음에 사무원들이 가지는 피해의식 이런 게 뭐 버무

려져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그 사무직원들은 법원, 검찰에 가면 법원, 검찰에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민원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법원에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멀리 보이는 과장석을 향해서 절을 하고 들어가는. 요즘 같으면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사무원이었기 때문에 사무원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 납득이 잘 안가는. 저도 이제 변호사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고객 아니냐? 고객이 대우를 왜 못 받아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게 또 그런 소리는 딱 귀에 들어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많았죠.

■ 구술자 주요이력

1950. 부산 출생

1970.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1982. 변호사노무현법률사무소 입사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

1989. 법무법인 국제 입사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3년 후배. 1982년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해 1989년까지 사무장으로 재직했다. 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1988년 13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하기까지 과정을 접하면서 그 시기 사무실 살림을 도맡았다